

# 거 소 투 표 신 고 서

귀하께서는 통·리·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,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신고서는 2023년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3년 3월 17일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세 대 주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생년월일	성 별	남 · 여
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신청(전국동시지방선거 제외)			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\_\_\_\_\_ (인)

\_\_\_\_\_ 구·시·군의 장 귀하

- 주: 1. 이 서식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.  
2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  
3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·시설 명을,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 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택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 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  
5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습니다.  
6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# 폴 칠 하는 곳

(접 는 선)

(보내는 사람)

우 편 요 금  
수취인후납부담

우편번호

(받는 사람)

시 · 도 구 · 시 · 군 읍 · 면 · 동 귀하

등 기 취 급

거소투표신고서 재중

우편번호

※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3. 3. 17.)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접 는 선)

(접 는 선)